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3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29.(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 29.(월)	담당부서	유통물류과
담당과장	서기웅 과장(044-203-4380)	담 당 자	허정민 사무관(044-203-4381)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1월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하여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16년 기준, 지원대상 상점가 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20개

□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17.7.16)」 및 보완대책('18.1.18)의 일환으로 '상점가 기준 완화' 추진

○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조직화·협업화 지원 강화)

【붙 임】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요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try OPEN
try and Energy

OPEN 정책 공감 소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허정민 사무관(☎ 044-203-4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1-29 11:29:44

붙 임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요**

1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 상점가 기준 완화 [시행령 제5조]

○ **(현행)** 상점가 기준 ① **인구 30만 초과** 시·군·구에서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② **인구 30만 이하** 시군구에서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이원화

○ **(개정)** 기초지자체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점포 밀집지구로 일원화**하여 상점가의 인정대상을 확대

< 상점가 기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구 분	현 행	개 정
인구 30만 초과 시·군·자치구	50개 이상의 점포 / 2천m^2	30개 이상의 점포 / 2천m^2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	30개 이상의 점포 / 2천m^2	

2 예상 질의 답변

1. 상점가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중기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에 준하여 상점가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등이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음

※ 세부 지원사업 및 지원규모는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18.1.4, 중소벤처기업부)' 참조

2. 상점가로 인정·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 (인정절차) 현재 상점가 자체를 인증·등록하는 규정은 없음

□ (지원절차) 상점가의 상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을 결성해야 함

○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상점가진흥조합은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제81조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1-29 11:29:44

붙 임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를 각각 “30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5조(상점가의 범위) ---------- ---------- ---------- ---------- ---------- ---------- ---------- ---------- ---------- ---------.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1. ---------- ---------- 30개 ------ ---------- ---------- ---------- ---------- ----------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2. ---------- ---------- ---------- ---------- ---------- ---------- ---------- ---------- ----------